

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20-13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해야 하며,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제3항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,
- 「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및 주요기능

-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 (이사장: 허성관)
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
나.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하고, 매년 일정 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야 하는바,
-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,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,
- 우리 구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「한국지방세연구원」에 법정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 하고자 함

다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

- 2021년도 출연금 : 16,098천원
- 「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(2019회계년도)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민분의 1.3 (0.013%)을 출연금으로 배정
※ 2020.9.8. 지방세기본법 개정 공포 (대통령령 제30994호)
-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 후, 세부사항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으로 편성하여 대한 구의회 심의 및 확정

라. 추진일정

- 2020. 9월 :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수립
- 2020. 10월 : 구의회 의결 요청
- 2020. 10월 : 구의회 의결(제 244회 임시회)
- 2020. 11월 ~ 12월 : 예산 심의 및 확정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-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관계법령

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-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

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 - 1. 1만분의 1.2 <개정 2020. 9. 8.>
 -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-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-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-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-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-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30994호, 2020.9.8.>

- ① 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) 2021 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.3으로 한다.